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7. 26 선고 2023가합102808 판결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건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6. 28.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648,047,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0.부터 2024.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와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전남 영암군 소재 D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를 위하여 기존에 확보한 154KV 변전소(이하 '154KV 변전소'라 한다)의 변압기 등을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위 154KV 변전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E감사의 아버지로서 사내이사이다.

순번	계약일	계약명 (계약내용)	계약금액
1	2021. 2. 20.	용역도급계약 (C D산단 태양광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비/실시 설계)	110,000,000원
2	2021. 6. 24.	154KV 변전소 건설공사계약 (C D산단 에너지사업 154KV F 제작 납품)	1,045,000,000원
3	2021. 11. 15.	165KV G축 3단자 선로보호반 계약 (C/154KV G축 3단자 선로보호반 공급 설치)	99,000,000원
4	2021. 12. 10.	C 154KV 변전소 건설공사(변압기 부문) (C D산단 에너지사업 154KV 변전소 구축공사)	2,772,000,000원
5	2021. 12. 29.(1차) 2022. 3. 18.(2차)	C 영암 발전단지 2차분 (C 영암 발전단지 2차분 수배전반 및 저압반)	1,300,200,000원

나.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C는 2021. 12. 23. 원고에게 '1. 차용금액 : 일금 일십억 원 정(₩1,000,000,000), 2. 상환기일 : 2022. 5. 31., 3. 상환기일은 D산단 태양광발전 본 펀드 상환일에 따라 상호간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원고와 C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확약서 제1항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 확약서 제2항의 수익금을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다. 원고는 2021. 12. 30. 16:11경 C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는 같은 날 16:34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확약서

지불금액 : 일금 일십억 원 정 (₩ 1,000,000,000원)

1. C는 원고로부터 받은 차입금 일십억 원을 2022. 5. 31.에 원고 통장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차입금 일십억 원에 대한 이자는 매달 이천만 원으로 하며 매달 말일에 원고 통장으로 지급한다.

(단, 차입금에 대한 상환일은 D산단 태양광발전 본펀드 상환일에 따라 상호간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

2. C가 소유하고 있는 154KV 변전소 용량 중 6MW를 원고에 매각 우선 권리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수익은 원고가 가져간다(단, 대한조선 태양광발전허가 건에 대해서는 154KV 변전소 용량을 양도할 수 없다). 1년 이내에 154KV 변전소 용량 6MW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변전소 용량 매각 우선권리 대신 상호간 협의하여 수익금을 제공한다(단, 1MW당 수익금은 육천오백만 원을 보장한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22. 8. 30. C를 상대로 위 가.항의 순번 2 내지 5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상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및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가합10618호), 원고와 C는 위 소송이 계속중인 2022. 11. 15.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및 이 사건 대여금이 3,284,400,000원임을 확인한다. C는 원고에게 정산 합의한 합계 3,284,400,000원을 2022. 11. 16.에 1,200,000,000원, 2022. 12. 28.에 900,000,000원, 2023. 3. 22.에 684,400,000원, 2023. 4. 20.에 5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C가 2022. 11. 16. 1,20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23. 3. 31. 위 법원에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나머지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C는 원고에게 2,117,060,800원 및 그 중 2,084,400,000원에 대하여 2022.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23. 4. 4. 'C는 원고에게 2,084,400,000원을 2023. 4.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3. 4. 22.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C의 일부 변제

한편, C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22. 1. 28. 2022. 2. 28., 2022. 3. 25., 2022. 5. 2., 2022. 6. 10., 2022. 6. 30., 2022. 8. 1.에 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2022. 11. 22. 이 사건 대여원금 중 7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7,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3억 원과 이 사건 수익금 3억 9,000만 원 합계 6억 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에게 선이자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2,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C가 원고에게 변제한 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지급된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수익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기술용역계약상 시행착오로 원고가 시공한 154KV 변전소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한국전력공사의 선로와의 연결(계통연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C는 위 변전소를 이용 및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수익금 부분은 실효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주채무인 C의 이 사건 수익금채무가 이 사건 정산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경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선이자 공제 주장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조).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에 충당되어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여원금이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대부업자의 대부에 관한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이자제한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직후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송금한 액수가 이자로 약정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원고가 선이자 부분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금 10억 원에서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9억 8,000만 원(=10억 - 2,000만 원)이 C가 실제로 받은 원금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기초로 하여 대여일인 2021. 12. 30.부터 변제기인 2022.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연 20%¹⁾의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는 82,158,904원(= 9억 8,000만 원 × 연 20% × 153/365)인 반면, 선이자 2,000만 원 외에 그 변제기 전에 합계 8,000만 원(= 2022. 1. 28. 2,000만 원 + 2022. 2. 28. 2,000만 원 + 2022. 3. 25. 2,000만 원 + 2022. 5. 2. 2,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17,841,096원(=2,000만 원 + 8,000만 원 - 82,158,904원)이 최고이자율 초과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여금 10억 원에서 17,841,096원이 총당되어 985,158,904원(=10억 원 - 17,841,096원)이 변제기인 2022. 5. 31.에 C가 갚아야 할 원금이 된다.

나) 변제 주장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2022. 6. 10. 2,000만 원, 2022. 6. 30. 2,000만 원, 2022. 8. 1.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돈 중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총당되므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위 각 돈은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총당되고, 마지막 변제일인 2022. 8. 1. 기준 원고의 채권은 대여 원금 958,047,074원²⁾ 및 이에 대한 2022. 8. 2.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① C가 2022. 6. 10. 지급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원금 985,158,904원에 대한 2022. 6. 1.부터 2022. 6. 10.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5,398,130원(=985,158,904원 × 20% × 10/365)에 먼저 총당되고, 나머지 14,601,870원(=2,000만 원 - 5,398,130원)은 원금에 총당된다.

② C가 2022. 6. 30. 지급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원금 970,557,034원3) 에 대한 2022. 6. 11.부터 2022. 6. 30.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0,636,241원(=970,557,034원 × 20% × 20/365)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9,363,759원(=2,000만 원 - 10,636,241원)은 원금에 충당된다.

③ C가 2022. 8. 1. 지급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원금 961,193,275원4) 에 대한 2022. 7. 1.부터 2022. 8. 1.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6,853,799원(=961,193,275원 × 20% × 32/365)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146,201원(=2,000만 원 - 16,853,799원)은 원금에 충당된다.

다) 소결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58,047,074원(= 잔존 원금 958,047,074원 - 원고가 지급을 자인하여 청구에서 제외한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수익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가 2021. 12. 23.로부터 1년 이내에 154KV 변전소 용량 6MW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 1MW당 6,500만 원으로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가 2022. 12. 23.까지 154KV 변전소 용량 6MW를 매각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수익금으로 390,000,000원(=6MW ×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사용전검사를 미완료하는 등 제대로 공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피고가 154KV 변전소를 이용 및 활용할 수 없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수익금 부분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업무범위에 ‘154KV 변전소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을 것’과 ‘한국전력공사의 선로에 대한

접속공사(계통연계공사)'5)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를 모두 마치고 시운전까지 완료한 점, ③ 원고와 C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정산합의에 대한 청구를 대체로 받아들이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수익금 부분이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주채무인 C의 이 사건 수익금채무가 이 사건 정산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경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과 관련된 것으로서 C의 이 사건 수익금채무는 이 사건 정산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8,047,074원(= 이 사건 대여금 258,047,074원 + 이 사건 수익금 390,0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여금 258,047,074원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수익금 390,000,000원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연 5%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민, 판사 박지은, 판사 김지원

1) 이 사건 대여금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7. 7. 시행)에 따라 연 20%이다.

2) = 961,193,275 - 3,146,201원

3) = 985,158,904원 - 14,601,870원

4) = 970,557,034원 - 9,363,759원

5) 계통연계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 상당의 시설부담금을 납부 받아 직접 시공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할 뿐 특별히 당사자간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아니하였다.